

계룡시 의료급여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호
의결년월일	2005. 7. . (제 17 회)

제출일자	2005. 6. .
제 출 자	계 룡 시 장

1. 개정이유

의료급여 대불금을 상환기한 미상환할 경우 의료급여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세대에게 이중적 고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, 이를 개선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정신적 고통 경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기한내 미상환시 급여정지한다는 조항 삭제(제7조제2항)
- 의료급여 정지를 받고도 대불금 미상환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조항에서 ‘의료급여 정지’를 ‘대불금의 독촉’으로 개정(제7조제3항)

3. 참고자료

- 신·구조문대비표
- 관련법령
 - 의료급여법

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 (대불금의 상환 등)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.

1. 10만원 미만은 3회
2.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
3. 30만원 이상은 12회

②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6월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대불금 상환 등) ①(생략)	제7조(대불금의 상환 등) ①(현행과 같음)
②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6 월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<u>하며</u> , <u>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</u> <u>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</u> <u>다.</u>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의료급여의</u> <u>정지를</u>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	③----- <u>대불금</u> <u>의 독촉을</u> ----- ----- -----.

관 련 법 령(발 취)

□ 의료급여법

제10조(급여비용의 부담)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.

제17조(급여의 중지 등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
2.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

제20조(급여비용의 대불)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급여비용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에 한한다)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.

제22조(독촉 등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25조(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

충당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의료급여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한다)을 설치한다.

제28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④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